

1. 개정이유

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412호, 2024. 3. 26. 공포, 9. 27. 시행)됨에 따라, 정보제공 요청방법과 목적 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,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를 보유한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, 정보를 보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서면, 전자우편, 전화,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.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.

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

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보관해야 한다.

④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·보관해야 한다.

1.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. 다만,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
2. 제1호 외의 기록물·인쇄물·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: 파쇄 또는 소각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, 제공 받은 정보의 기록·보관·파기 방법,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4(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)</u> <u>①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를 보유한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, 정보를 보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</u> <u>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서면, 전자우편, 전화,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.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</u>

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보관해야 한다.

④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·보관해야 한다.

1.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. 다만,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.

2. 제1호 외의 기록물·인쇄물·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: 파쇄 또는 소각

<u>제4조의4</u> ~ <u>제4조의6</u> (생략)	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, 제공 받은 정보의 기록·보관·파기 방법,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4조의5</u> ~ <u>제4조의7</u> (현행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와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생활안전교통국	
연 락 처	(02) 3150 - 1394